

농 어 업 경 영 체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 신고의 반려사유를 정함(안 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9조의3, 제18조~제18조의3 신설)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 개정)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21조의4, 별표2 신설)

-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안 제21조의5 신설)
-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5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방법·절차 등)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설립신고서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합법인의 변경신고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조합법인의 신고의 보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법 제16조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조합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신청서에는”을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4항”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제2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한다”를 “첨부하며, 제2항 각 호의 이외의 사항은 법 제1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로 한다.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정관의 기재사항)”을 “(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조합법인의 해산)”을 “(조합법인의 해산신고 방법·절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중전의 제1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3(중전의 제13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로 하며, 제20조의3을 제21조의6으로 한다.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방법·절차 등)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설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회사법인의 변경신고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단,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은 제외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단,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6.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어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④ 어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6.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7.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 운영업 (단, 영어조합법인만 해당된다.)

8. 「어촌·어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 (단, 영어조합법인만 해당된다.)

제21조의2(실태조사의 요청자료)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21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련된 사항
4. 법 제20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산 청구와 관련된 사항
5.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8항”을 “법 제19조의3제1항, 법 제19조제11항”으로, “규정”을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

등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2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8항”을 “법 제19조의3제1항, 법 제19조제11항”으로, “규정”을 “규정, 및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회사법인의 해산신고 방법·절차 등)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회사법인의 신고의 보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법 제19조제6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18조(중전의 제17조)의 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을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9조의3제2항, 법 제19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제18조의3(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 법 제19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
증

제21조(종전의 제20조)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을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으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

사법인의 정관례”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정관례”로 한다.

제21조의3(중전의 제20조의2)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중전의 제21조의2)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2조의6(중전의 제21조의6)제1항 중 “별표 2의2”를 “별표 4”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별표 3(중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21조의2제2항 관련)”을 “(제22조의2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중전의 별표 2) 전문인력의 지정요건란 중 “7명”을 “5명”으로 한다.

별표 3(중전의 별표 2)에 전문인력의 지정요건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4(중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21조의6제1항 관련)”을 “(제22조의6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3)의 제목 중 “(제23조 관련)”을 “(제2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3)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삭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3) 제2호마목 중 “법 제20조의2제5항”을 “법 제20조의2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어업법인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어업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 (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방법</u> <u>· 절차 등) 법 제16조제3항 전</u> <u>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u> <u>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u> <u>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u> <u>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u> <u>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u> <u>설립신고서를 시장(특별자치도</u> <u>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u> <u>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u> <u>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u> <u>·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u> <u>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u> <u>야 한다.</u>
<u><신 설></u>	<u>제8조의2(조합법인의 변경신고 방</u> <u>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3</u> <u>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 <u>1. 명칭</u> <u>2. 목적</u> <u>3. 사업</u> <u>4. 사무소의 소재지</u> <u>5. 임원</u>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 4. (생략)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생략)

<신설>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합법인의 해산신고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해산신고

<신 설>

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조합법인의 신고의 보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법 제16조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
 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
 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이 신청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또
 는 법 제31조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1항---- 조합법
 인-----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등
 기를 하려는 경우 설립등기신청
 서에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

<신 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제2항-----

----- 경우, -----
-----.

----- 첨부하며,
제2항 각 호의 이외의 사항은 법 제1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준용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9조의3(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등
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신
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삭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 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양식업과 관련된 공동 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

제12조(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

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 산정방

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

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

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

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

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

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

장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

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

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 산정방

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

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

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

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7조(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방법

· 절차 등) ① 농업인 및 농업
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
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설립신고

<신 설>

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회사법인의 변경신고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및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회사법인의 해산신고 방법·절차 등)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신 설>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회사법인의 신고의 보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법 제19조제6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u>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u> <u>1. 합명회사</u> <u>2. 합자회사</u> <u>2의2. 유한책임회사</u> <u>3. 주식회사</u> <u>4. 유한회사</u> <u>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u> <u>1. 합명회사</u>	<u>경우</u> <u>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 <u>3.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u> <u>4.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u> <u>제18조(회사법인의 설립등기)</u> <u><삭 제></u> <u><삭 제></u>
---	---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생략)

<신설>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법 제19조제11항-----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

1. 제17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② 법 제19조의3제1항, 법 제19조제11항----- 규정, 및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

1. 제17조제2항-----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2. (생략)

<신설>

<신설>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18조의2(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
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② 법 제19조의3제2항, 법 제19
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
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회사법
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 설>

제18조 (생 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18조의3(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 법 제19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
가공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
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
업(단,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
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은 제외
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단,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
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6.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어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④ 어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
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
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

6.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7.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 운영업 (단, 영어조합
법인만 해당된다.)

8. 「어촌·어항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
(단, 영어조합법인만 해당된
다.)

<삭 제>

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
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
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
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
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시정기간) 시장(특별자
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

제21조(정관례의 작성) -----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정관
례-----

-----.

제21조의2(실태조사의 요청자료)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
법인의 등기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
라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21조의3(시정기간)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

수) ① 법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 설>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

	<u>사 및 시정명령에 관련된 사항</u> 4. <u>법 제20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산 청구와 관련된 사항</u> 5. <u>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u> 6. <u>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관련된 사항</u> 7. <u>그 밖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u> ②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u>제20조의3·제21조</u> (생략)	<u>제21조의6·제22조</u> (현행 제20조의3 및 제21조와 같음)
<u>제21조의2</u>(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u>별표 2</u>와 같다. ③·④ (생략)	<u>제22조의2</u>(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3</u>과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3 ~ 제21조의5</u> (생략)	<u>제22조의3 ~ 제22조의5</u> (현행 제

<u>제21조의6</u>(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u>별표 2의2</u>와 같다. ② (생략) <u>제22조</u> · <u>제22조의2</u> (생략) <u>제23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3</u>과 같다.	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와 같음) <u>제22조의6</u>(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 ----- ----- <u>별표 4</u>----- -----. ② (현행과 같음) <u>제23조</u> · <u>제23조의2</u> (현행 제22조 및 제22조의2와 같음) <u>제24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5</u>와 ----- --.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군수·구청장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 제1호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 제2호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비고: 1.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가격의 차액을 말한다(다만,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농지임차인이 위반행위자에게 농지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연도 중에 농업경영 개시 시점 또는 농업경영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농업경영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나목에 따른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로 한다.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매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x 해당 연도(월)의 정상지가변동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 정>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조직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인력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1.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업무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사업실적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 관련 조사, 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라.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연 락 처	(044) 201 - 1537